

연천군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 규칙 [2016. 10. 25] 규칙 제135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농업산·학협동심의회 규정」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연천군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농업단체의 범위) 이 규칙에서 “농업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.

1.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
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3. 농산물의 생산·가공·판매 등으로 신기술 습득 및 선도 농가로 연천군에서 육성하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인,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
4. 그 밖에 농업 관련 산업계·학계·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

제3조(설치) 연천군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.

제4조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
 - 나. 연천군 내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
 - 다. 연천군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

라.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지도·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

2.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
3.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연천군지부장, 연천군 산림조합장
4. 농업인기술단체협의회장, 농촌지도자연천군연합회장, 생활개선회연천군연합회장, 농업경영인연천군연합회장, 4-H연천군연합회장, 연천군여성농업경영인회장

5. 과학영농선도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

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·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심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2.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,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·지도에 관한 사항
4.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

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,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

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전문위원회)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9조(회의록)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조)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과 여비)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결과 활용)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, 이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